

나. 관광사업 양수 등의 경우 행정처분효과 승계(법 제8조제3항 신설)

관광사업자가 양수 또는 법인의 합병으로 관광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 사업취소·정지처분 등의 행정처분의 효과도 함께 승계되도록 함.

다. 유원시설업의 조건부 허가 신설(법 제29조의2 신설)

(1) 유원시설업(遊園施設業)을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유원시설업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함.

(2) 유원시설업의 경우에 조건부허가 규정을 둠으로써, 시설과 설비를 갖춘 후 유원시설업 불허가로 인한 민간사업자의 손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행정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하는 효과가 기대됨.

라. 관광지의 지정 및 조성계획 승인의 실효(失效)제도 도입(법 제53조의2)

(1) 관광지를 지정한 후 2년 이내 조성계획의 승인신청이 없거나 조성계획 승인을 얻은 후 2년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관광지의 지정 또는 조성계획 승인의 효력

이 상실되도록 함.

(2) 무분별한 관광지의 지정·개발을 방지하고, 관광지가 장기간 방치됨으로써 대상지역의 효율적인 토지이용이 저해되는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됨.

마. 관광특구지역안의 시설에 대한 지원(법 제68조의2 신설)

(1) 관광특구지역안의 문화·체육시설, 숙박시설 등으로서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문화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시설에 대하여 관광진흥개발기금의 보조 또는 융자를 할 수 있도록 함.

(2) 관광특구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으로 관광특구내의 관광 부대시설설치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저작권법중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노무현 인

2004년10월16일

국무총리 이 해 찬

국무위원
문화관광부 정동채
장관

◎法律 第7233號

著作権法中改正法律

著作權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4조의2(전송권) 실연자는 그의 실연을 전송할 권리를 가진다.

제6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7조의3(전송권) 음반제작자는 그의 음반을 전송할 권리를 가진다.

제75조제3항중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복제권 및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실연방송권”을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복제권,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실연방송권 및 제6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전송권”으로 한다.

제76조제2항중 “복제 또는 방송할 권리”를 “복제·방송 또는 전송할 권리”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저작권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실연자(實演者) 및 음반제작자에게 그의 실연 및 음반에 대한 전송권을 부여함으로써 인터넷 등을 활용한 실연 및 음반의 이용에 대한 권리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국민체육진흥법중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노무현 인

2004년10월16일

국무총리 이 해 찬

국무위원
문화관광부 정동채
장관

◎法律 第7234號

國民體育振興法中改正法律

國民體育振興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5항중 “特別市長·廣域市長 또는 道知事(이하 “市·道知事”라 한다)가”를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로 한다.

제15조제2항중 “國家”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한다.

제16조제1항중 “國家”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고, 동조제3항중 “體育施設의 設置를”을 “체육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와 체육과 관련된 용역을 제공하는 업종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산업의 육성을”로 하며, 동항에 제1호 내지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운동경기의 개최 및 지원과 관련된 경기전문중사업